

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

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 1과
세제분석 2과

“ 국회는 2020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20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함.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사항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개정사항이 있음.

이에 본 보고서는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를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. ”

주요 개정항목



소득세 최고세율 인상



금융투자상품 세제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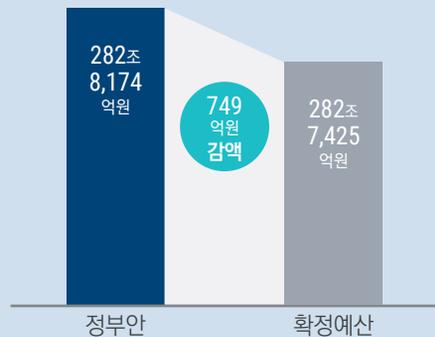
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 ·
납부면제 기준 상향



뉴딜인프라투자
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

확정된 국세수입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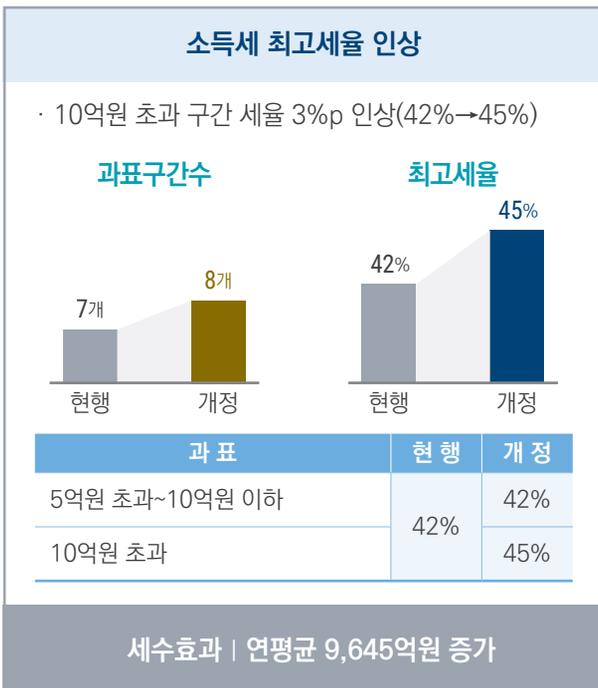


I. 2020년 정기회 세법개정안 처리과정

-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안 337건(국세 228건, 지방세 109건) 논의
- 2020년 12월 2일 · 9일 20개 세법개정안(국세 16개, 지방세 4개) 의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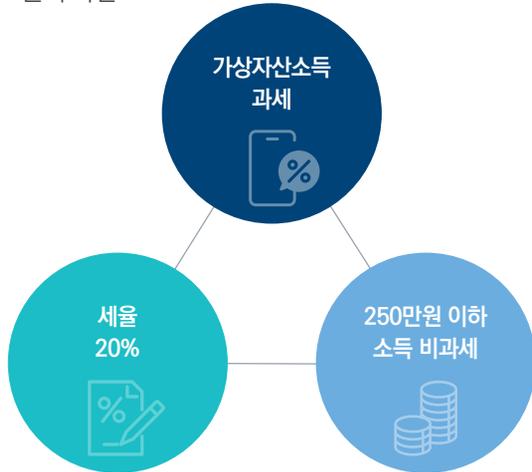


II. 세목별 주요 개정 사항



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

· 가상자산의 양도 ·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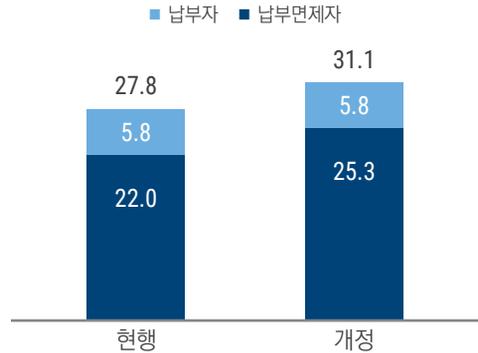
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 · 납부면제 기준 상향

· 간이과세 기준 : 4,800만원→8,000만원
· 납부면제 기준 : 3,000만원→4,800만원

간이과세자 및 그 구성의 비중변화

(전체 개인사업자 대비, %)



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

· 개별 투자세액 공제를 “통합투자세액공제” 로 통합

개별 세액공제 (Positive)



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(Negative)



세수효과 | 연평균 4,267억원 감소

뉴딜 인프라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

· 한국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 뉴딜 인프라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



III. 향후 논의과제 (주요 부대의견)

<p>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향후 보완책 마련</p>	<p>금융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</p>	
<p>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마련</p>	<p>조세의 세입 확충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중장기 세입확보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 될 필요</p>	
<p>상속세 과세체계 개편</p>	<p>투자 · 고용 유인 등 국내경제 활성화를 감안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 필요</p>	
<p>전자담배 세율조정안 마련</p>	<p>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율조정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율조정안 마련</p>	

IV. 확정된 2021년도 총수입 예산 및 변동내용

